

case
5

블라인드

요약

사례명	블라인드 원산지표시 목적의 원산지판정
사례번호	NY N335242 (2023.09.27.)
사실관계	중국에서 일부 생산 및 가공한 부품(슬리팅 및 도장 작업한 대만산 알루미늄, 플라스틱 박스 및 기타 부품)을 대만으로 수입한 후, 대만에서 알루미늄 슬랫, 상단 및 하단 레일, 코드리스 매커니즘, 마운팅 하드웨어를 제작한 뒤 최종 조립하여 블라인드 생산
쟁점 및 판정	① 원산지표시 목적의 원산지판정 대만에서의 제조공정으로 슬랫, 상단 및 하단 레일, 코드리스 매커니즘, 마운팅 하드웨어가 제작되고 블라인드로 최종 조립되어 명칭, 성질, 용도가 변한 새로운 상업적 물품으로 실질적으로 변형되었으므로 블라인드의 원산지는 대만임
근거법령	-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Regulations Part 134(19 C.F.R. § 134)

I 판정사례⁵⁾

사 례 명 [블라인드] 원산지표시 목적의 원산지판정

사례번호 NY N335242 (2023.09.27.)

사실관계

요청자	All Strong Industry USA, Inc.	
제품명	• 베네시안 블라인드	
제품 구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알루미늄 슬랫 • 상단 및 하단 레일 • 코드리스 메커니즘 • 마운팅 하드웨어 세트 	

제조공정



상세공정

1. 중국 제조공정
 - 대만산 알루미늄 코일을 슬리팅 및 도장
 - 플라스틱 박스 및 기타 부품 생산
2. 대만으로 부품 수입
3. 대만 제조공정
 - 알루미늄을 절단 및 성형하여 슬랫 제작
 - 알루미늄을 가공하여 상단 및 하단 레일 제작
 - 중국산 플라스틱 박스 및 부품을 대만산 금속 스프링과 조립하여 코드리스 메커니즘 제조
 - 대만산 금속 브래킷 및 알루미늄 나사와 중국산 플라스틱 손잡이를 포함하여 마운팅 하드웨어 세트 제작
 - 모든 부품을 조립하여 최종 제품 생산
4. 대만산 골판지 상자에 포장 후 미국 수출

5) 해당 물품에 대한 품목분류 정보가 부재하므로 관련 품목 정보 및 시장 정보 미제공

쟁점사항

- ✓ 원산지표시 목적의 원산지판정

관련 법령
및 분석

원산지표시 목적의 원산지판정

관련 법령 검토

- ☐ 『19 C.F.R. § 134.1(b)』에 따르면, 원산지란 해당 물품이 제조, 생산, 또는 재배된 국가를 의미하며, 다른 국가에서 추가적인 공정이나 재료가 더해진 경우, 그러한 국가가 원산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해당 물품에 대해 실질적 변형(substantial transformation)이 발생해야 함
 - 실질적 변형 판단 기준: 명칭(name), 성질(character), 용도(use)의 변화 여부

❖ 참고 판례: *Texas Instruments Inc. v. United States*, 69 C.C.P.A. 151 (1982)

- 실질적 변형에 대한 판단은 모든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(totality of the evidence)하여 이루어짐

❖ 참고 판례: *Nat'l Hand Tool Corp. v. United States*, 16 C.I.T. 308 (1992), *aff'd*, 989 F.2d 1201 (Fed. Cir. 1993)

- 제조 또는 결합 공정이 경미한 수준에 불과하여 제품의 정체성이 유지되는 경우, 실질적 변형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함

❖ 참고 판례: *Uniroyal, Inc. v. United States*, 3 CIT 220, 542 F. Supp. 1026, 1029 (1982), *aff'd*, 702 F.2d 1022 (Fed. Cir. 1983)

- 실질적 변형에 대한 판단은 모든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(totality of the evidence)하여 이루어짐

❖ 참고 판정: *CBP Ruling HQ W968434 (2007.01.17)*

❖ 참고 판례: *Ferrostaal Metals Corp. v. United States*, 11 CIT 470, 478, 664 F. Supp. 535, 541 (1987)

- 다양한 원산지의 부품들로 완성품을 조립하는 경우 새로운 명칭, 성질, 용도를 부여하는 실질적 변형이 발생했는지 판단하기 위해서 구성 부품, 부품들이 거친 가공 공정 등 모든 요소를 고려함. 단일 요소는 결정적이지 않으며 단순한 수준의 조립 작업으로는 실질적 변형이 발생하지 않음

판정 결과

- ☐ 대만에서의 제조공정으로 슬랫, 상단 및 하단 레일, 코드리스 메커니즘, 마운팅 하드웨어가 제작되고 블라인드로 최종 조립되어 명칭, 성질, 용도가 변한 새로운 상업적 물품으로 실질적으로 변형되었으므로 블라인드의 원산지는 대만임

결론

- ✓ 실질적 변형 기준에 따라 원산지표시 목적상 블라인드의 원산지는 대만임

Ⅱ 시사점

- 일반적으로 알루미늄과 같은 원자재를 가공하여 블라인드와 같은 특정 상업적 제품으로 가공하는 작업이 한 국가에서 수행되는 경우 해당 국가에서 실질적 변형이 발생한 것으로 판정함

Ⅲ 참고자료

- CBP Ruling NY N335242 (2023.09.27.), <https://rulings.cbp.gov/ruling/N335242>
- CBP 19 C.F.R. § 134, <https://www.ecfr.gov/current/title-19/chapter-I/part-134>
- Texas Instruments, Inc. v. United States (1982), <https://www.courtlistener.com/opinion/6928163/texas-instruments-inc-v-united-states/?q=Texas+Instruments%2C+Inc.+v.+United+States>
- National Hand Tool Corp. v. United States (1993), https://www.courtlistener.com/opinion/6737087/national-hand-tool-corp-v-united-states/?q=National+Hand+Tool+Corp.+v.+United+States&type=o&order_by=score+desc&stat_Published=on
- Uniroyal, Inc. v. United States (1983), <https://www.courtlistener.com/opinion/2283980/uniroyal-inc-v-united-states/>
- Ferrostaal Metals Corp. v. United States (1987), https://www.courtlistener.com/opinion/1504219/ferrostaal-metals-corp-v-united-states/?q=Ferrostaal+Metals+Corp.+v.+United+States&type=o&order_by=score+desc&stat_Published=on